

고성군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조례안

의안 번호	제897 호
----------	--------

제출년월일 : 2005. 2. 23.
제출자 : 고성군수

1. 제안이유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도덕적 해이현상과 원칙이 존중되지 않는 그릇된 사회 분위기를 새롭게 개선하고, 모든 군민이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민간 주도의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을 모든 군민이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군민들의 자율·자발적인 운동이라고 정의함(안 제2조)
- 나. 제자리 찾기 운동에는 모든 군민과 민간단체·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군수는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다. 제자리 찾기 운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50인이내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아래 제1·2분과위원회를 두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5조·제6조 및 제7조)
- 라. 위원회 전체회의는 연 2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의결사항은 군 공보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함(안 제9조 및 제10조)
- 마.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3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 경상남도범도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
-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고성군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식 선진화를 위한 “범군민 제자리 찾기 운동”(이하 “제자리 찾기 운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제자리 찾기 운동”이라 함은 고성군내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이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군민들의 자율·자발적인 실천운동을 말한다.

제3조(참여범위) 제자리 찾기 운동에는 모든 군민과 민간단체, 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제자리 찾기 운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수는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추진위원회 설치) ① 제자리 찾기 운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범군민제자리 찾기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50인이내로 구성한다.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자리 찾기 운동을 위한 주요사항의 기획·홍보 및 심의·의결
2. 각종 민간단체 제자리 찾기 운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과제 발굴
3. 제자리 찾기 운동의 지원 및 관련 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과 수석부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에서 호선한다.
2. 위원장 산하에 제1·2분과위원회를 두며, 제1분과위원회는 기획·운영, 제2분과위원회는 지역혁신 지도와 홍보를 담당한다.
3. 분과위원회에는 각각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둔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전체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성군 제자리찾기운동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의결사항 등 처리)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한 사항을 공보 등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위촉 및 해촉) ① 위원은 각계각층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② 위원이 직무와 관련여부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나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수당 등) 고성군은 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성군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